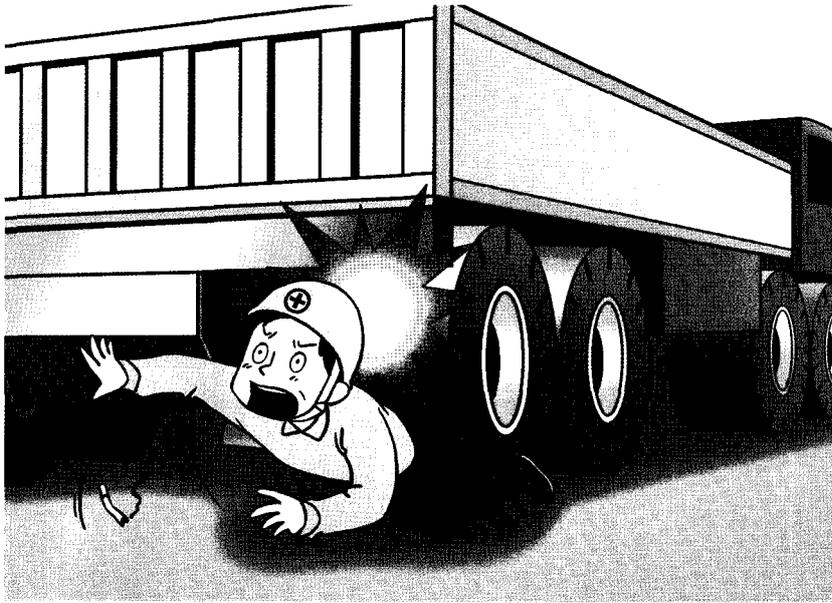


후진하는 트레일러 뒷바퀴에 협착



업종 : 운송업
 생산품 : 컨테이너 운반
 기인물 : 트레일러 바퀴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 1명



1. 재해개요

냉동컨테이너 4개에 냉동물 적입작업을 완료한 후 화주와 함께 화물수량 및 봉인작업을 마치고 작업자들은 철수함. 트레일러 기사와 화주가 사무실에서 서류정리 후 트레일러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 후진 중 이상함을 느낌. 운전자가 내려보니 피재자가 뒷바퀴 사이에 깔려 사망한 상태로 발견됨. 주변에 불씨가 있는 담배꽂초 발견으로 트레일러 뒤쪽 바퀴부분에서 담배를 피우던 것으로 추정됨.

2. 재해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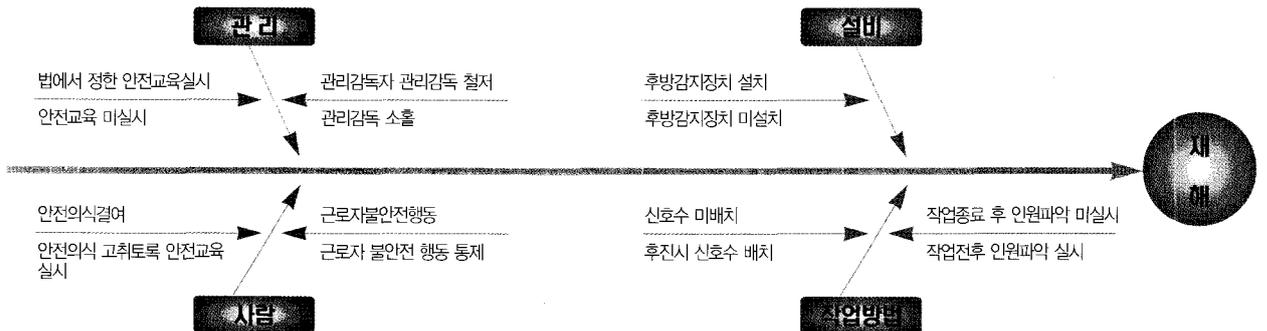
- (1) 작업 종료 후 인원파악 미실시
- (2) 차량 출발 전 차량주변 점검 미실시
- (3) 근로자의 불안정한 행동
- (4) 정기안전교육 미실시
- (5) 관리감독 소홀

3. 예방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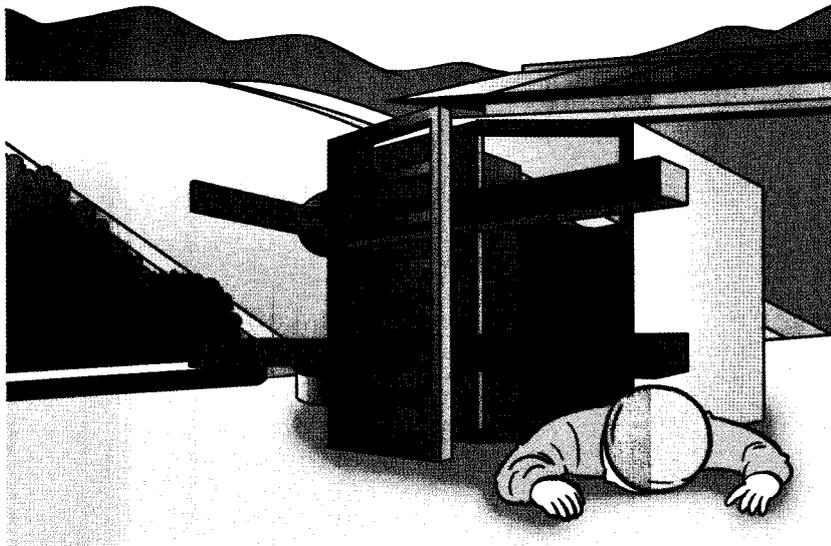
- (1) 작업시작 전, 후 인원파악 철저
- (2) 차량출발 전 차량주변 이상여부 파악
- (3) 근로자의 불안전 행동 통제
- (4) 정기안전교육 실시
- (5) 차량이 출발 시까지 관리감독 철저

4. 법 위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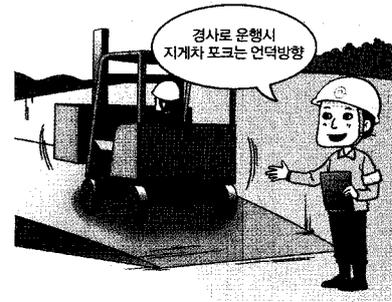
가.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나. 법 제31조제1항 근로자의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지게차 경사로 운행 중 전도



업종 : 지류제조업
 생산품 : 종이팩
 기인물 : 바닥
 재해유형 : 전도, 협착
 피해정도 : 인적 / 사망 1명, 물질 / 200만원



1. 재해개요

지게차 면허가 없는 근로자가 팔레트에 적재되어 있는 종이팩을 공장동으로 운반하기 위해 지게차를 운행, 경사로를 급하게 운행하여 내려온 직후(전진운동) 우회전하다 관성에 의해 지게차가 전도되며 지게차와 바닥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함.

2. 재해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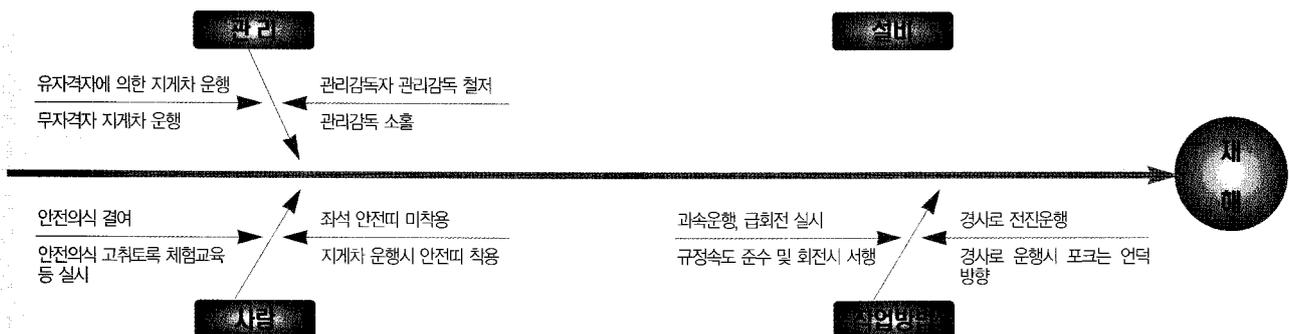
- (1) 무자격자에 의한 지게차 운행
- (2) 좌석 안전띠 미착용
- (3) 경사로를 전진운동으로 내려옴
- (4) 경사로에서 과속운동
- (5) 급회전 실시
- (6) 관리감독 미실시

3. 예방대책

- (1) 유자격자에 의한 지게차 운행
- (2) 지게차 좌석 안전띠 착용
- (3) 경사로 운행시 포크는 언덕방향
- (4) 과속 및 급회전 금지
- (5) 관리감독 철저

4. 법 위반사항

가.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나. 법 제31조제1항 근로자의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지공장 롤에 협착



업종 : 제지업
 생산품 : 제지
 기인물 : 캔버스(롤)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 1명



1. 재해개요

제지공장 초지설비 드라이어 룸에서 지절이 발생하여 원지를 연결하는 작업 실시. 작업중 발생하는 파지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피재자 옷자락이 캔버스(롤)에 말리는 것을 동료 작업자가 목격하고 급정지 하였으나 가슴부분이 설비에 협착된 상태임. 급이 캔바스를 해제하고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사망함.

2. 재해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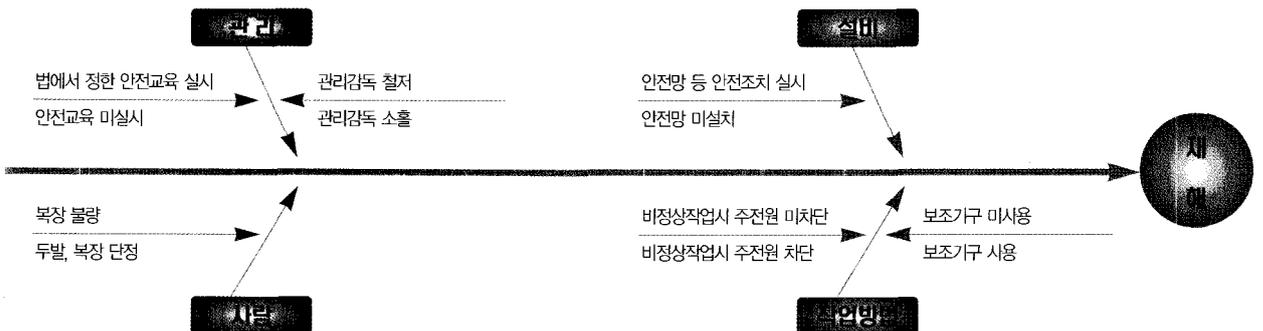
- (1) 비정상작업시 전원 미차단
- (2) 보조기구 미사용
- (3) 위험점에 근접하여 작업
- (4) 설비측면 안전망 설치
- (5) 안전교육 미실시
- (6) 관리감독 소홀

3. 예방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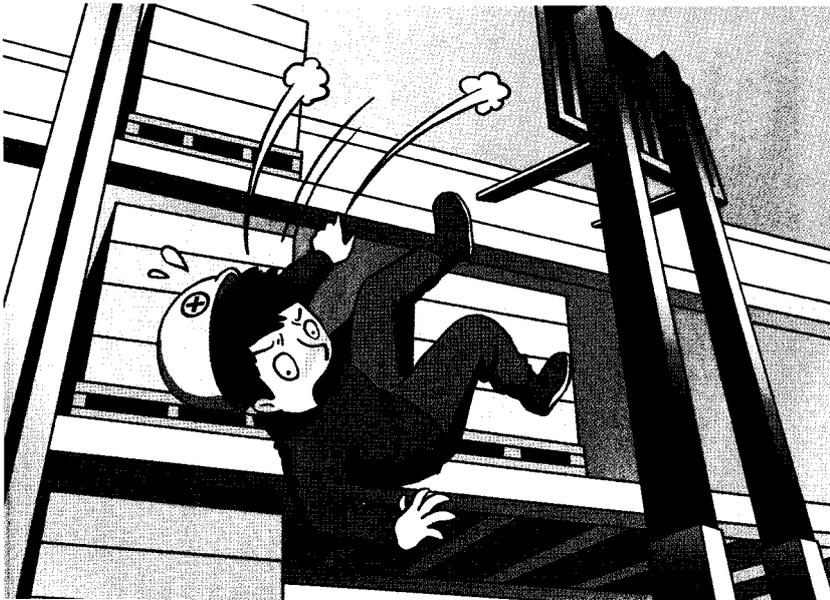
- (1) 비정상작업시 주전원 차단
- (2) 파지제거 작업시 보조기구 사용
- (3) 위험점에 접근금지
- (4) 설비측면 안전망 설치
- (5) 정기안전교육 실시
- (6) 관리감독 철저

4. 법 위반사항

- 가.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나. 법 제31조제1항 근로자의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지게차 포크리프트에서 추락



업종 : 화학제품제조
 생산품 : PP, PE 제품
 기인물 : 바닥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1명



1. 재해개요

원자재창고 Rack에 스티커 부착 및 원자재 정리정돈작업 실시. 지게차 마스트에 올라간 후 상승시켜 최상단 Rack 프레임에 스티커를 부착 및 팔레트 위의 원자재 포대 정돈 중 실족으로 약 5m 바닥으로 추락함. 아래 있던 동료 근로자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뇌출혈로 사망한 상태임.

2. 재해원인

- (1) 불안정한 상태로 고소작업 실시
- (2) 지게차 용도 외 사용
- (3) 추락에 대비한 안전조치 미 실시
- (4) 고소위치에서 정리정돈 실시
- (5) 관리감독 소홀
- (6) 안전교육 미 실시

3. 예방대책

- (1) 고소작업시 안정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는 작업대 등 설치
- (2) 지게차 용도 외 사용금지
- (3) 안전대 등 추락방지용 안전장구 착용
- (4) 정리정돈은 바닥에서 실시
- (5) 관리감독 철저
- (6)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 실시

4. 법 위반사항

가.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나. 법 제31조제1항 근로자의 안전교육 미 실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